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90호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예 규

○ 예 규 제 9 6 호 「남동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예규 총 무 과 2

공 고

○ 공 고 제 6 0 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도 시 재 생 과 5
인가 공고·열람

○ 공 고 제 6 4 7 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재 무 과 11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예 규

남동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4월 1일

남동구 예규 제96호

남동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예규

남동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별 포인트”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배정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무수습자 및”을 “실무수습자,”로, “선수단 「남동구 공무원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를 “선수단 및 「남동구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첫째,둘째아”를 “첫째아를 출산한 적용 대상자에 대하

여 1명당 1,000포인트, 둘째아”로, “500 포인트”를 “2,000포인트”로, “적용 대상자”를 “적용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특별 포인트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 포인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 포인트 배정기준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 구성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민원 서비스 질 향상

□ 주요내용

- 적용 대상 조문 정비 : (안 제7조제1항)
- 출산장려 포인트 확대 : (안 제9조제1항제4호)
 - (기존) 첫째,둘째아 출산자에 대하여 1명당 500포인트 1회 배정,
셋째아 이상 출산자에 대하여 1명당 3,000포인트 1회 배정
 - (변경) 첫째아 출산자에 대하여 1명당 1,000포인트 1회 배정,
둘째아 출산자에 대하여 1명당 2,000포인트 1회 배정,
셋째아 이상 출산자에 대하여 1명당 3,000포인트 1회 배정
- “그 밖의 장려포인트” → “특별 포인트” 변경 : (안 제9조제1항제5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6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고 · 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2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로과(☎453-2723), 도시재생과(☎453-2954)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수현지구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 당초: L=50m, B=6m, A=442m²
- 변경: L=50m, B=6m, A=322m² (감 120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0. 7. 16.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남동구청(도로과 ☎032-453-2723, 도시재생과 ☎032-453-2954)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1.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구분	동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 고
1	기정	장수동	381-3	도	3390.0	52.0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변경	장수동	381-3	도	3390.0	44.0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중1-10호선 면적제외 (진입부 정비)
2	기정	장수동	751-21	도	59.0	15.0	도로	국유지	국토교통부			
	변경	장수동	751-21	도	59.0	15.0	도로	국유지	국토교통부			중1-10호선 면적제외 (진입부 정비)
3	기정	장수동	394-1	도	737.0	29.0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변경	장수동	394-1	도	737.0	27.0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중1-10호선 면적제외 (진입부 정비)
4	기정	장수동	390-4	대	23.0	23.0	도로	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2번길 9, *층 (장수동)			
	변경	장수동	390-4	대	23.0	23.0	도로	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2번길 9, *층 (장수동)			
5	기정	장수동	394-7	잡	39.0	39.0	도로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변경	장수동	394-7	잡	39.0	38.0	도로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6	기정	장수동	390-3	대	279.0	-	도로	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2번길 9, *층 (장수동)			
	변경	장수동	390-3	대	279.0	9.0	도로	정*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 12번길 9, *층 (장수동)			
7	기정	장수동	751-20	도	72.6	92.0	도로	국유지	국토교통부			
	변경	장수동	751-20	도	72.6	70.0	도로	국유지	국토교통부			
8	기정	장수동	393-2	대	55.0	55.0	도로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변경	장수동	393-2	대	55.0	55.0	도로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일련 번호	구분	동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 고
9	기정	장수동	393-3	대	55.0	53.0	도로	원*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290번길 60 ***동 ***호(이천 신둔코아루아파트)			
	변경	장수동	393-3	대	53.0	53.0	도로	원*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290번길 60 ***동 ***호(이천 신둔코아루아파트)			
10	기정	장수동	391-5	도	12.0	12.0	도로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2
								오*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 35-3 32블록 1, 4롯데 벽산블루밍아파트 ***-***			1/2
	변경	장수동	391-5	도	12.0	12.0	도로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2
								오*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 35-3 32블록 1, 4롯데 벽산블루밍아파트 ***-***			1/2
11	기정	장수동	392	전	219.0	-	도로	오*민	경기도 부천시 남구 상동 ***-**			
	변경	장수동	392	전	219.0	1.0	도로	오*민	경기도 부천시 남구 상동 ***-**			
12	기정	장수동	392-2	전	55.0	55.0	도로	오*민	경기도 부천시 남구 상동 ***-**			
	변경	장수동	392-2	전	55.0	55.0	도로	오*민	경기도 부천시 남구 상동 ***-**			
13	기정	장수동	391-11	대	8.0	8.0	도로	오*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변경	장수동	391-11	대	8.0	7.0	도로	오*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4	기정	장수동	368-9	도	1,222.6	9.0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	장수동	368-9	도	1,222.6	62	도로	공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1-3호선 면적제외 (재포장)
	기정	소 계				442						
	변경	소 계				322						

2. 지장물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장수동	392-2	콘크리트 포장	M2	5.5	해***크	남동구 장수동 ***	

3. 한전주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장수동	394-1	NO. 0+5.0	R	8920D631수현지38L5	한국전력	
2	장수동	391-11	NO. 3+1.0	R	8920D645수현지38L4R2L2L1	한국전력	

4. 체신주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장수동	394-1	NO. 0+5.0	R	C-151001-1025	LGU+	
2	장수동	393-3	NO. 2+10.0	R		KT	
3	장수동	751-20	NO. 2+10.0	L	만수6전주번호15-3	KT	
4	장수동	391-11	NO. 3+1.0	L		KT	

5. 가로등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장수동	381-3	NO. 0+6.00	R	후-05	남동구청	

6. 가로수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NO)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고
1	장수동	381-3	NO. 0+6.00	R		남동구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647호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 허가일’이 되도록 개정(안 제16조)
- 「초지법」에서 공유재산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반영(안 제27조)
 - 공유지에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함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 「초지법」 제1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72, FAX 453-22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개정규칙(안): 별첨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안 제16조)
- 「초지법」에서 공유재산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반영(안 제27조)
 - 공유지에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함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 「초지법」 제1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u>영 제17조의 규정을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 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u>법 제21조를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u>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7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① (생략)	제38조(조성원가 매각) (현행 제1항과 같음)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22. 11. 15.][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

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2022. 11. 15.>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02(2023.11.8.)호]

I 추진 배경

○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된 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및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존재

⇒ (정비방향)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지자체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 해소

< 주요 정비대상 >

- ①법제처에서 권리 침해 사례로 정비 권고했으나, 미정비한 규정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시설물 철거 등 위반, 공유재산 사용기간 임의 축소 사례
- ②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한 규정
⇒ 공유재산 심의대상 임의생략, 부적절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 구성 등

II 정비대상 자치법규 현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5개 정비유형, 207건의 위반사례 발굴

< 유형별 정비대상 >

(단위 : 건)

법제처의 권리 침해사례 정비 권고, 미정비 (168건)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재산법령 위반(39건)		합계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 제한	공유재산 시설물 철거시 임의 처분	공유재산 사용기간 부적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생략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부적절	
32	5	131	34	5	207

- 207건 위반사례 중 시·도 14건(6.8%), 시·군·구 193건(93.2%) 차지
- 정비대상 상위 지자체는 전남(26), 경기(24), 충남(19), 서울(19) 등

< 지자체별 정비대상 >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계	19	6	8	14	7	6	7	1	24	16	11	19	12	26	14	15	2	207
광역	2	-	1	2	-	1	2	1	-	-	1	1	-	-	-	1	2	14
기초	17	6	7	12	7	5	5	-	24	16	10	18	12	26	14	14	-	193

III 주요 정비내용

-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
- (관련규정)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음(법§21①)
- (문 제 점) 기부채납일은 재산의 소유권 이전한 날로서 기부자의 실제 사

용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일부 조례에서 ‘기부채납일’을 기산일로 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 초래

공유재산법	<사례>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u>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

- (개선방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이 되도록 개정

IV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에 정비계획 통보(~11월)
 - 공유재산 관리현황 집중 점검회의 시 안내
 - 선거의회자치법규과와 협업, ‘25년 합동평가 과제 포함(~12월)
- 이행실적 점검(~’24. 상·하반기)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입력 시스템에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입력
 - (행안부) 지자체 이행결과 확인(선거의회과) 후 회계제도과로 통보

☐ 초지법

[시행 2023. 7. 25.][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13. 4. 5.]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